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25
----------	-------

발의연월일 : 2026. 10. 7.

발 의 자 : 서삼석·윤준병·김원이
임미애·허영·박용갑
조인철·박지원·문금주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형법」의 개정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이로 인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휴업하려는 때에 업종 전환, 경영난 등으로 일시 휴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와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5조, 제34조 및 제35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형의”를 “징역형의”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형의”를 “징역형의”로 한다.

제25조 전단 중 “(開始)·휴업”을 “(開始)·30일 이상 휴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휴업한”을 “30일 이상 휴업한”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는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할 수 있다.

1. 선박을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인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
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
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당한”을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방지
또는 인명의 구조 등 정당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제21조(결격사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u>형의</u>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 ----- <u>징역형의</u> ----- ----- -----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 (생략)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u>형의</u>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 ----- <u>징역형의</u> ----- ----- -----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u>開始</u>) · 휴업 또는 폐지(<u>廢止</u>)	제25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 ----- --(<u>開始</u>) · 30일 이상 휴업 ---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① (생략)

② 누구든지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繫留)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을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신 설>

③ · ④ (생략)

----- . 30일 이상 휴업한 ----- .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단서 삭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할 수 있다.

1. 선박을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인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누구든지 <u>정당한</u>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 -- <u>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방지 또는 인명의 구조 등 정당한</u>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